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개별통지 의무화〉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6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개별통지 의무화	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0일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역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개별통지 의무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 제8조1)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지정(법 제8조제1항)]

구분	지정대상 구역
생활환경보전	(제1호)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수질보전	(제2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하 생략)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기 타	(제5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축사의 신·증축 제한, 일정 요건하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³⁾하는 등 일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의 신규 지정·변경 및 해제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권리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

2)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예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젓소)축사 이전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소·젓소)축사시설로서, 기존 배출시설을 전부 폐업·철거하고 기존 허가·신고 면적 규모 이내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하되 같은 읍·면·동 내 지역에 이전·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전될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주민들로부터 70퍼센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 등의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령에는 해당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은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1차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 등에 공람·공고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⁴⁾.

또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토지소유자 이외에 임차인 등이 포함될 경우 통지 비용이 과도해지고,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⁵⁾.

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관보나 공보를 통한 고시와 의견수렴에 더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송달이나 통지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행정력 소요가 과도하다**는 입장임.

5) 경상북도 김천시와 안동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에서도 고시 전 공고 절차가 있고,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제출 절차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41